

공적채무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담당기관 안내

구 분	제도 주요내용	담당기관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속채무조정(연체전 채무조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연체우려자, 연체기간 30일 이하 - (지원) 분할상환, 원리금 상환유예 ○ 프리워크아웃(이자율 채무조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- (지원) 분할상환, 연체이자감면, 이자율 조정 ○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- (지원) 분할상환, 이자감면, 원금감면 	신용회복위원회 (1600-5500)
■ 개인회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‘급여소득자’와 ‘영업소득자’ 중 지급불능 상태 또는 발생 우려 개인 - (지원)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	법원 (주소지 관할)
■ 개인 파산(면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 - (지원)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 	법원 (주소지 관할)
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코로나 19피해자영업자·소상공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부실차주(연체 3개월 이상) ② 부실우려차주 (연체 3개월 미만이나, 근시일 내에 발생 우려자) - (지원) 원금조정/금리감면/상환기간조정 대출유형(담보·신용·보증)등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	신용회복 위원회 (1600-5500) 캠프 (1588-3570)
■ 정책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시민금융진흥원) 취약계층에 대한 미소금융상품 - (신용회복위원회) 신용회복지원, 개인회생 채무상환 중 인자, 금융사기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- (근로복지공단) 임금체불, 임금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	시민금융진흥원 (1397) 신용회복 위원회 (1600-5500) 근로복지 공단 (1588-0075)